

안동시의회 공고 제2021-58호

「안동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안동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일

안 동 시 의 회 의 장



「안동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(2022. 1. 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→ 제51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~제116조 → 제126조~제129조

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2. 3. ~ 2021. 12. 8.(5일 이상)

4. 의견제출

「안동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21년 12월 8일까지 안동시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(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, 팩스 또는 직접방문

1) 전자우편 : flora99@korea.kr

2) 주 소 : (우36691) 안동시 퇴계로 115(명륜동), 안동시의회

3) 팩 스 : 054-840-6409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안동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■ 조례안명 : 안동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안동시 조례 제 호

안동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동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
1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42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의회</p> <p>제2조(범위)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3. <u>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</u>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 <u>제51조</u>----- -----</p> 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</p> <p>3. <u>법 제126조부터 제129조</u>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 :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26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27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8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